

2024년 더욱 든든해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안내

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**두텁게** 지원하겠습니다.

「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(2024~2026년)」

- 급여별 선정기준 단계적 확대(생계 30% → 35%, 주거 47% → 50%) 추진
- 가구원 6명·자녀 3명 이상 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
-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
- 청년·어르신 근로·사업소득 공제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
-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및 교육활동 지원 비용 인상



01 | 「기초생활보장제도」란

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**사회안전망**으로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비용 등을 지원합니다.

2023년 7월 기준 185만 가구 252만 명 지원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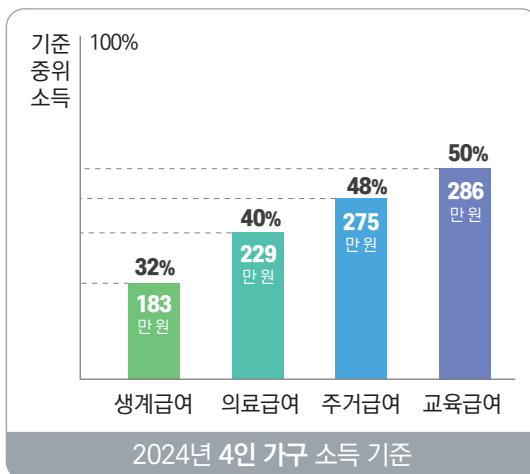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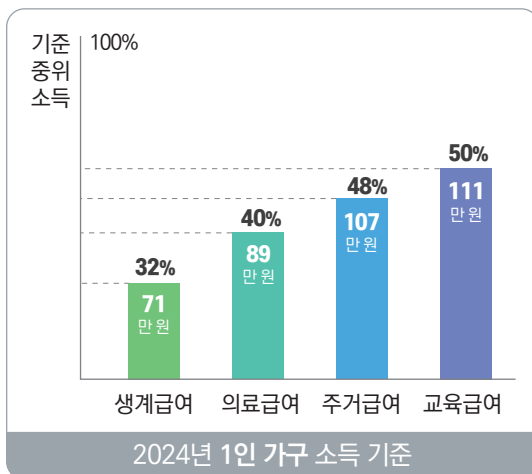
「기초생활보장제도」란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비용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
어떤 분들을 지원하나요

-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*인 분들에게 가구 단위로 지원합니다.

* 2024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%, 의료급여는 40%, 주거급여는 48%, 교육급여는 50% 이하의 가구에 지원합니다.



‘기준 중위소득’이란?
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70여 개 정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합니다.

-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(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)가 없는 사람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지원합니다.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생계급여

- 최대 지원금액(기준 중위소득의 32%)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20일 지급

기준중위
소득의

32%

최대
지원
금액

실제
지원
금액

가구의
소득
인정액*

* (소득인정액) 실제 소득에서 가구별 지출 특성 및 근로·사업소득 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

주거급여

- (임차가구) 임차료 지원

〈2024년 임차료 지원기준〉

(단위 : 천 원/월)

구분	1급지 (서울)	2차 (경기·인천)	3차 (광역·세종사· 수도권 외 특례시)	4차 (그 외 지역)
1인	341	268	216	178
2인	382	300	240	201
3인	455	358	287	239
4인	527	414	333	278
5인	545	428	344	287
6인	646	507	406	340

- (자가가구) 주택 수선비용 지원

〈2024년 주택 수선비용 지원기준〉

경보수(주기)	중보수(주기)	대보수(주기)
457만 원(3년)	849만 원(5년)	1,241만 원(7년)

의료급여

-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

〈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〉

구분		1차 (의원)	2차 (병원, 종합병원)	3차 (상급 종합병원)	약국
1 종	입원	없음	없음	없음	-
	외래	1,000원	1,500원	2,000원	500원
2 종	입원	10%	10%	10%	-
	외래	1,000원	15%	15%	500원

*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은 3%

교육급여(바우처)

- 학생 수급자의 교육활동지원비 등

초등학생 ☎ '23년 415천 원 → ☎ '24년 461천 원

중학생 ☎ '23년 589천 원 → ☎ '24년 654천 원

고등학생 ☎ '23년 654천 원 → ☎ '24년 727천 원



해산·장제급여

- 출산 시 1인당 70만 원
- 사망 시 1인당 80만 원

자활급여 및 자산형성 지원

-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 일자리 지원
- 청년내일저축 등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

02 | 2024년 생계급여 역대 최고 인상

제도 시행 **24년 만에 역대 최고**로 많아집니다.

2023년 대비 1인 가구 월 9만 원(+14%), 4인 가구 월 21만 3천 원(+13%) 증가

-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70여 개 복지사업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6.09% 인상되었습니다.
-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으로 국가장학금,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, 가사간병서비스,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등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.

|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|

(단위 : 원)

구 분	가구원 수					
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기준중위소득	222만 8,445	368만 2,609	471만 4,657	572만 9,913	669만 5,735	761만 8,369
생계급여(중위 32%)	71만 3,102	117만 8,435	150만 8,690	183만 3,572	214만 2,635	243만 7,878
의료급여(중위 40%)	89만 1,378	147만 3,044	188만 5,863	229만 1,965	267만 8,294	304만 7,348
주거급여(중위 48%)	106만 9,654	176만 7,652	226만 3,035	275만 358	321만 3,953	365만 6,817
교육급여(중위 50%)	111만 4,222	184만 1,305	235만 7,328	286만 4,956	334만 7,867	380만 9,184

- 아울러,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0% → 32% 이하 가구로 7년 만에 2%p 확대함에 따라,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1인 가구 월 9만 원(+14%), 4인 가구 월 21만 원(+13%) 더 많아집니다.

|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|

(단위 : 원)

구 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
2023년	62만 3,368	103만 6,846	133만 445	162만 289	189만 9,206	216만 8,394
2024년	71만 3,102	117만 8,435	150만 8,690	183만 3,572	214만 2,635	243만 7,878
전년 대비	+89,734 (+14.40%)	+141,589 (+13.66%)	+178,245 (+13.40%)	+213,283 (+13.16%)	+243,429 (+12.82%)	+269,484 (+12.43%)

03 | 2024년 달라지는 모습

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**더욱 두텁게** 지원합니다.

자동차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, 근로·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 등

공 통



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

'23년 1600cc 미만,
자동차가액의 50%를 소득으로 산정
'24년 2000cc 미만, 소득 산정에서 제외



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급지 개편 및 공제금액 상향

'23년 3급지 / 1억 150만 원 ~ 2억 2,800만 원
'24년 4급지 / 1억 9,500만 원 ~ 3억 6,400만 원



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 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

청 년



청년 근로·사업소득 40만 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

24세 이하

30세 미만



2023년



2024년



청소년 한부모(24세 이하) 근로·사업소득 공제금액 20만 원 추가 확대

40만 원

60만 원



2023년



2024년

장애인·어르신



중증장애인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



의료·식사·돌봄·주거 등 제공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

73개 시·군·구
연간 6백 명

228개 시·군·구
연간 2천 3백 명



2023년



2026년

아동·청소년 양육 가정



다인(6인)·다자녀(3인) 가구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

1600cc 이상, 월 100% 2500cc 미만, 월 4.17%



2023년



2024년



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급여 11% 인상

초등학생 ₩ '23년 415천 원 → '24년 461천 원

중학생 ₩ '23년 589천 원 → '24년 654천 원

고등학생 ₩ '23년 654천 원 → '24년 727천 원

04 | 3년 뒤 달라지는 모습

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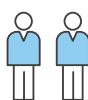
「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(2024~2026년)」

생계급여 수급자 수

선정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
30% → 32% 까지 상향
* 향후 35%까지 단계적 상향

재산기준 자동차·주거용 재산
기준 완화

2023년 현재



(+ 21만명 $+\alpha$)



159.3만명

180.7만명

의료급여 수급자 비율

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
의료 필요도에 따라
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



(+ 5만명 $+\alpha$)



2.9%

3.0%

주거급여 수급자 수

선정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
47% → 48% 까지 상향
* 향후 50%까지 단계적 상향



(+ 20만명)



233.3만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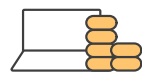
252.8만명

자산형성 지원 수혜자 수

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



(+ 4만명)



누적 11만명

누적 15만명

교육급여 보장수준

교육활동 지원비 보장수준 확대



최저교육비의 90% 지원

최저교육비의 100% 지원

05 | 신청 서류 및 방법

지원 절차는

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·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·군·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.



신청주체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, 기타 관계인이 신청

※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준비해 주세요.



조사내용 신청 가구의 소득·재산, 근로능력, 취업상태,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,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

※ 수급 결정 이후 조사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시·군·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

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(토·일·공휴일 제외)

※ 소득·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.

신청 서류는

필수 신청서

- 1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-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(부양의무자 포함)
 - 생계·주거·교육급여 수급권자는
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
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



구비 서류(필요시)

- 1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 - 2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
증빙할 수 있는 서류
 - 3 사용대차 확인서
 - 4 소득·재산 확인 서류
 - 5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
 - 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
- ※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
지출 실태 조사표,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
요구할 수 있음

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
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!

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: **국번없이 129**

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
한층 두터운 지원으로
취약계층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는
약자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.



보건복지부 · 교육부 · 국토교통부